김포한강신도시 Ac-10 블록 호반베르움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17.07.26 이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9.06일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은 해당기준일임)
- ■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 ■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은 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06) 현재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6.09.0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청약신청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됨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1명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해당지구는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06) 현재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6.09.06 이전부터 계속거주하게 입주하는 자)로 청약신청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됨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1명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해당지구는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06) 현재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6.09.06 이전부터 계속거주하게 입주하는 자)로 청약신청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됨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1명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별에 따라 청약 및 순위별 순위별 공간 유형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2년, 24회 납입' → '1년, 12회 납입'으로 변경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외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제외
  - 소형 3주거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에서 →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일정에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시뮬레이션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외환,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이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하여 입력하였을 경우에도 본인의 실수로 인해 청약접수 결과 발생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임을 명확히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기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은행 청약신청일 접수시간 : 08:00~17:30)
  - 국민은행(www.kbstar.com)을 공인인증서로 이용하여 청약 신청자의 편리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기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숫자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서비스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1세대 1명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속(「민법」 제779조에 따른 직계혈족을 말한다)으로서 함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직계혈족을 말한다)으로서 함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으로서 함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별에 따른 청약 및 순위별 순위별 공간 유형 : 기존 1, 2, 3순위 방식을 → 1. 2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2년, 24회 납입'→ '1년, 12회 납입'으로 변경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외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제외
  - 소형 3주거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에서 →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 청약신청자격별 청약신청일정에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청약시뮬레이션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1.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다자녀 /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2017.09.13(수) 09:00~15:00	김포한강신도시A<-10블록 호반베르디움 6차 견본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7.09.13(수) 17:00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문의 1566-7326)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가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됨(동 · 호수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6항에 따라 특별공급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다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선정함.

2. 특별공급 유의사항

- ■ 1세대 1명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 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자격 조정대상 해당됨)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 과 관계없이 여러 공급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및 제1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사유일이 발생(기간개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공급별 구비서류 미 구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토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초본은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주민센터 재등록일 이후부터 신청
- ■ 신청자는 본인의 직접 작성한 청약신청서 및 청약자격 증명서류 등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1회 한정 지역요건 / 자격제한	구분	주택형	공급세대수	해당세대수	청약자격	청약신청일	청약신청방법
민영주택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자	1순위	전국	무주택세대구성원	2017.09.13(수) 09:00~15:00	김포한강신도시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일반공급	1순위	1순위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무주택세대구성원	2017.09.14(목) 08:00~17:30	1순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2순위				2017.09.15(금) 08:00~17:30	2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외환,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이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에도 본인의 실수로 인해 청약접수 결과 발생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임을 명확히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기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0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1세대 이면서 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에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 본주 관공서의 증명서(무상인증서)에서 이에 관한 공정증서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입주자모집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16.09.0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며, 20%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경기도에 2017.03.0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김포시 1년미만 거주자에게 50%는 수도권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의 배점기준표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상 주택이 주택소유 예외사항 미적용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직상한 청약자일 신청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청약 가점기준표를 적용토록 함. (건설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구 분	김포시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3항 (본회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 이하 지역별, 주택규모별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야 함.

- 입주자 지정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 본 세대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금융결제원 (숫자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 (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7.09.22(금) ~ 2017.10.01(일) (10일간)	
인터넷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인터넷청약 ⇨ 당첨사실 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전체서비스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당첨확인
전화(ARS)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서비스코드 :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09.22(금)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업가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고층부터 저층순으로 청약통장 구분 없이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됨.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수위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대상으로 30%를 먼저 선정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20%를 선정하며, 기타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50%를 선정함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김포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청약자로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청약자(김포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수도권 청약자로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선정)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되거나 불합 공개한 후를 경계한 후를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에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일반공급 청약자격을 가진자에 한하여 예비입주자로 지정되며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함.
(통보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청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당 계약은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5 계약체결

■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구 비 서 류	비고
공통		○		•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용) 1통 또는 전자 본인 서명확인서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대리계약시본인의 모두 제외자로 간주함 –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인장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자	○		• 주민등록등본(가족기준 또는 세대주 기준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재혼의 경우 배우자 분리세대 등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일반공급		○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고분양가고시(1년 이상)인 경시된 복무확인서 1부, • 청약통장순위기준확인서 1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으로 입주자자격에 1년이상 기업하고 그 가주주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우도권 거주자로 신청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서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접수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세대주 서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가주거 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증명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 · 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 일시 : 2017.09.13(수) 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신청자가 입을 경우 당첨자 선정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일시 : 2017.09.22(금)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게재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김포한강 Ac10블록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 일시 – 2017.09.27(수) ~ 2017.09.29(금) (3일간, 09:3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7.09.22(금)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2순위	• 일시 : 2017.09.23(토)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하을 알려드리고자 직접 발급받아야 함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적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정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용 · 일괄 수행함에 따라 일반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일괄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게 부적격자는 소명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게 부적격자는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 본 세대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금융결제원 (숫자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 (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7.09.22(금) ~ 2017.10.01(일) (10일간)	
인터넷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인터넷청약 ⇨ 당첨사실 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전체서비스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당첨확인
전화(ARS)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서비스코드 :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09.22(금)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 · 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업가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고층부터 저층순으로 청약통장 구분 없이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됨.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수위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건설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대상으로 30%를 먼저 선정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